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2가단1011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분 14분의 2에 관하여 2021. 1.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4,4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사 임윤한

별지

부동산 목록

(1등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성시 , ,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성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아파트

1층 616.86㎡, 2층 572.09㎡, 3층 내지 20층 각 677.6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안성시 대 35200.9㎡
2. 경기도 안성시 도로 1216.2㎡
3. 경기도 안성시 도로 14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9㎡

(대지권의 표시)

- 1, 2, 3 소유권대지권 36560.9분의 56.68 끝.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C [] , 인천 미추홀구 D [] ,
E 호 ([])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이고, 위 C [] 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 이
며,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위 C [] 의 상속지
분을 분할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 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1) 소외 F [] 주식회사는 2015. 11. 26. 위 C [] 에게 금 300만원을
계약만료일 2019. 9. 25.,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894%로 하여 대
여해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대부거래계약서 참조).

그런데 위 C [] 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F [] (주)는 2017. 4. 12. 소외 G [] 주식회사에게 위 C []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위 G [] (주)는 2018. 10. 26. 원고에게 위 C [] 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3, 4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
서 참조).

이후, 원고는 위 C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인천지방법원 2020가소473244호), 원고승소판결이 2020. 10. 8. 선고되어 그즈음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판결문 참조).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위 C는 원고에게 금 7,454,948원 및 그 중 금 2,801,955원에 대하여 2021.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2) 위 C는 2015. 3. 31.경 소의 주식회사 H의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신청하면서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따라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그즈음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갑 제5호증 카드원장조회 참조).

그런데 위 C는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주)H는 2016. 12. 31. 소의 I 주식회사는 위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갑 제6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¹⁾,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위 I(주)는 2017. 12. 26. 원고에게 위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6호증의 3, 4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1) H 및 I은 최초 2006. 1. 27.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래, 위 계약에 근거하여 원래까지 H는 관련 채권을 I에 양도하고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위 [C]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640599호), 원고승소판결이 2019. 3. 21. 선고되어 그즈음 확정되었습니다(갑 제7호증 판결문 참조).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위 [C]는 원고에게 금 4,685,228원 및 그 중 금 1,730,244원에 대하여 2021.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8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3) 소의 주식회사 [J]은 2016. 2. 3.경 위 [C]에게 금 5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자율 연 29% 및 연체이자율 연 34.9%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9호증 대출약정서 참조).

그런데 위 [C]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주)[J]은 2017. 6. 21. 원고에게 위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10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이후, 원고는 위 [C]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418952호), 원고승소판결이 2018. 6. 22. 선고되어 그즈음 확정되었습니다(갑 제11호증 판결문 참조).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위 [C]는 원고에게 금 13,263,013원 및 그 중 금 4,590,263원에 대하여 2021. 11. 4.부터 다 갚는

년까지 연 34.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 증 채권계산서 참조).

(4)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위 (1) 내지 (3)항의 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인 25,403,189원입니다(7,454,948원 + 4,685,228원 + 13,263,013원).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C의 아버지는 소외 K인데, 위 K은 2020. 7. 15. 사망하였고, 위 C는 위 K의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위 K의 상속인들 및 위 C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축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21. 1. 15.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1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실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C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C의 재산인데, 위 C는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바, 위 분할협의를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학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채무자 C의 어머니로 추정됩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위 C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위 C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 취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2) 그런데 위 부동산은 위 사해행위 이전인 2010. 8. 5. '채권최고액 1억 4,640만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 인, 2012. 9. 73. '채권최고액 2,280만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 인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사해행위 이후인 2021. 2. 10. 말소되었었습니다(갑 제13호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참조).

따라서 본건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2021. 11. 3.까지의 원리금인 금 25,403,189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기 제출한 소장의 기재내용을 원용합니다.

2.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고가 채무자인 소외 C에게 가지는 채권액은 2021. 11. 3. 기준 25,403,189원입니다(7,454,948원 + 4,685,228원 + 13,263,013원).

3. 상속지분 등의 특정

가. 피상속인 K은 2020. 7. 15. 사망하였는데, 당시 위 K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B(피고, 수익자)와 자식들인 C(채무자), M가 있었습니다(갑 제14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15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16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참조).

따라서 피고와 채무자 C는 모녀관계이고, 위 C의 상속지분은 2/7입니다.

나. 위 K은 2020. 7. 15.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때는 '2021. 1. 15.'입니다(갑 제16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따라서 위 2021. 1.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입니다.

다.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미 밝혔듯이 위 부동산 중 2/7 지분은 위 C가 상속받았어야 함에도, 위 상속인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갑 제16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피고는 1/2 지분을 상속받았는 바, 피고가 소외 C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분은 2/14 지분($1/2 \times 2/7$)입니다.

4. 채무자 C의 무자력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의 2022. 2. 17.자 회신에 의하면, 위 C는 2020. 1. 1.부터 이 사건 사해 행위 당시(2021. 1. 15.)를 거쳐 조회일 2022. 1. 15.자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소유하였던 부동산이 없었습니다(적극재산의 부재).

C는 사해행위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C는 적극재산이 없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는 바, 그로인해 C는 무자력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5. 원상회복의 방법 관련

가.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위 사해행위 이전인 2010.

8. 5. '채권최고액 1억 4,640만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인, 2012. 9. 73. '채권최고액 2,280만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L'인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사해행위 이후인 2021. 2. 10.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합니다.

나. 사실심변론종결시와 가까운 2021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금 270,000,000원이고(갑 제17호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 참조),

주식회사 L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은 169,200,000원(146,400,000원 + 22,800,000원)인 바, 원고는 이를 피담보채무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부동산 가액 100,800,000원(270,000,000원 -

169,200,000원) 중 위 C의 상속지분 가액인 금 14,400,000원(100,800,000원 × 2/14 ; 소수점이하 절사)이 위 부동산 중 채무자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되는 책임재산 부분입니다.
